

공유경제와 복지: 벤클러 공유경제 모델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 상 호**

논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벤클러의 공유경제 모델(공유재 기반 동료생산)을 중심으로 비영리형 공유경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비영리형 공유경제는 공유를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복지모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공유경제가 주로 IT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IT 영역 외부로까지 이 모델의 확대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공유경제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는 공유경제의 물질적 조건인 네트워크 외부효과 측면에서, IT 영역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IT영역 외부로 공유경제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핵심 주제어: 공유경제, 상업경제, 동료생산, 네트워크 외부효과, 독립 계약자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 B3, I3, J6

투고 일자: 2019. 5. 1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9. 7. 23. 게재 확정 일자: 2019. 9. 6.

* 이 논문은 이상호(2017)를 수정·보완해서 작성되었다.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e-mail: lsh09191@naver.com

I. 서론

최근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복지나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미사용되거나 과소사용되는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원 공유가 확산될 경우 환경파괴 만이 아니라 빈부격차나 불평등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박건철·이상돈, 2016, pp.32-41). 게다가 공유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로 수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Goudin, 2016, p.12).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수익창출 기회로까지 여겨진다.

인간은 오래 전부터 자원의 공유나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는 인류사회에서 매우 오래된 전통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가 과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되면서 자원 공유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Sundarajan, 2016, pp.47-67). 유럽의회가 공유경제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장의 거래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산이 과소 이용되는 정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정의(Goudin, 2016, p.11) 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는 용어에서부터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¹⁾ 오늘날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사례로 흔히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가 언급되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평가되는 벤클러²⁾는 두 기업의 경제활동을 공유경제로 보지 않는다.³⁾ 그에게 공유경제는 가격체계가 아닌 사회관계와

1) '크라우드 기반 자본주의'(crowd-based capitalism)와 '공유경제'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유경제'라는 말보다 '협력 경제'(collaborative economy)나 그물망(mesh), 또는 '협력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거나, 깃 경제(gig economy), 동료 경제(peer economy), 임대 경제(renting economy), 주문형 경제(on demand economy)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Sundarajan, 2016, pp.27-28). 벤클러의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이 모든 개념들을 '공유경제'로 통칭하게 될 것이다.

2) 벤클러는 2004년 논문(Benkler, 2004)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고 평가된다(손상영, 2015, p.2).

3) 벤클러는 2006년 저작(Y. Benkler, 2006)의 한국어 번역본 서문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주문형 경제에 대해 핵심 추동력이 수익추구에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최은창 역, 2015, pp.viii-ix).

공유의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자원 공유에 대해 주로 가격체계에 기반을 둔 수익창출 기회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공유경제를 이해하거나 정의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공유경제 논의 내부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 주창자들은 대부분 자원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원의 공유가 환경 측면이나 수익창출 기회 측면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복지나 분배 측면에서도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공유경제가 대안적인 복지 혹은 분배 모델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두 견해, 즉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영리활동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접근하는 견해와 비영리 활동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접근하는 벤클러의 견해를 복지나 분배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후자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⁴⁾

기존의 복지제도는 대체로 시장이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른바 복지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나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자원의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안적인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대체로 공유경제를 성장이나 영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영리형)에서보다 비영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비영리형)에서 확인된다. 과연 이러한 가능성이 주로 비영리형 공유경제에서만 확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벤클러의 공유경제 모델이 대안적인 분배나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갖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한계는 없는 것일까? 한계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사유재산제도 아래서 자원의 공유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공유경제 주창자들의) 판단 혹은 주장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4) 벤클러의 견해를 복지나 분배 측면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나 복지 모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서 벤클러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벤클러의 비영리형 공유경제를 대안적인 복지모델의 가능성 측면에서만 살펴볼 것이다. 필자의 역량 상, 벤클러의 견해를 복지제도나 복지모델 전반과 비교하는 작업은 이후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II. 공유경제의 의미와 다양성

공유경제는 1984년에 와이츠먼⁵⁾에 의해 경기침체 극복 방안으로 처음 제시된 후 2008년 레식(L. Lessig)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화되었다(박건철·이상돈, 2016, p. 28).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각각 2009년과 2008년에 설립됨에 따라 2010년 무렵부터 공유경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영역으로 작동되기 시작했으며, 일반 대중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비로소 활발하게 나타났다(길현중, 2016, pp. 14-18).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는 그 의미가 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공유경제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던 2010년 무렵부터 공유경제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문형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이다혜, 2017, p 405). 벤클러가 이러한 주문형 경제에 대해 공유경제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음을 고려한다면, 공유경제 논의가 주문형 경제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비영리 차원의 문제의식에서 점점 더 멀어진 셈이다. 공유경제의 의미를 처음으로 구체화시켰다고 평가되는 레식의 공유경제 개념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레식은 상업경제와 공유경제를 구분한다. 전자에서는 돈이나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화폐교환 밖에서 작동되며, 가격이 아니라 우정과 같은 사회관계들의 집합에 의해 규제된다(Lessig, 2008, pp. 117-176). 이러한 정의는 벤클러에게서도 확인된다. 벤클러는 2004년 논문에서 상업경제와 공유경제를 구분하면서, 전자에서는 가격이 자원배분에 관한 정보와 유인의 주요 원천으로 기능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사회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Benkler, 2004, p. 282). 레식의 공유경제와 마찬가지로, 벤클러의 공유경제에서도 비시장적인 사

5) 공유경제는 일반적으로 'sharing economy'로 표현되지만, 와이츠먼은 'share economy'로 표현했으며(Weitzman, 1984), 그 의미 또한 오늘날의 공유경제와 다르다. 그는 공유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대안으로서 제시했는데, 여기서 공유는 노동자의 보수체계를 기업의 성과지수에 맞추어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Weitzman, 1984, pp. 2-3), 일종의 수익공유 개념에 가깝다.

회관계가 핵심적인 의미를 차지하는 셈이다.

벤클러가 보기에, 과거에는 이러한 공유가 자본주의 내부에서 주변적인 지위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원 공유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됨으로써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⁶⁾ 또한 그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영역이 산업정보경제에서 네트워크 정보경제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전자에서는 소유 전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 후자에서는 분산된 형태의 비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협력·조정 행위 (cooperative and coordinate action)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다. 전자에서는 정보·지식·문화를 확보하는데 높은 자본비용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후자에서는 정보와 문화의 소통이 철저히 탈집중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용부담 또한 사회에 폭넓게 분산된다. 후자, 즉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협력과 공유의 양식만이 아니라 동조적 공존의 양식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Benkler, 2006, pp. 3-7, 32-34).

벤클러는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등장으로 생산 조직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자유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free or open-source software⁷⁾; 이하 FOSS)의 등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그가 보기에,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거래 비용에 비추어 기업조직의 장점이나 가치를 설명했다. 여기서 기업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거래비용을 기업의 관리조직을 통해 최소화시킬 때 본질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는 이러한 설명 방식이 FOSS의 등장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자원이 공유되는 상황에서는, 거래비용 문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FOSS 생산조직은 시장 신호나 기업 관리직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프로그래머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참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 조직은 근본적으로 탈집중화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배타적 사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원 공유에 기초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을 기반

6) 벤클러에 따르면, 공유가능 재화는 초과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 능력을 2차 시장(secondary markets)보다 공유관계를 통해 활용할 때 거래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재화를 지칭한다 (Benkler, 2004, pp. 276-277).

7) 벤클러는 'free and open-source software'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FOSS로 표기할 것이다.

으로 한다. 그는 이러한 생산양식을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ommons-based peer production, 이하 CBPP)⁸⁾으로 명명하는데, 여기서 공유재는 자원에 대한 접근, 사용, 통제 권한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유 재산권에 반대되는 개념이다(Benkler, 2006, pp. 59-61).

벤클러는 공유경제가 상업경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아니 그에게 공유재 기반 행위의 효율성은 사회적 공유가 경제적 생산방식 중 하나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산업정보경제 시대에는 재화, 서비스, 자원의 공급을 위해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오늘날 기술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유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질적 자본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 시장, 산업계를 규제하는 국가-시장 복합체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보다 공유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공유가 가능할 것인가는 테크놀로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테크놀로지는 공유에 기반을 둔 생산양식이 지배적 생산양식으로 자리잡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결정할 뿐이며, 이것이 실제 사회에서 실행되는 수준은 해당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Benkler, 2006, pp. 119-122).

벤클러는 CBPP의 핵심 특징으로 탈집중화와 사회적 동기를 꼽는다. 후자가 개인들의 행위동기에 관한 것이라면, 전자는 행위자들이 기업의 관리자나 관료와 같은 그 어떤 중앙 조직자의 영향 아래서 행동하기보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칭한다. 또한 그는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암묵적 지식을 추가하거나,⁹⁾ 자발성과 창의성 외에 이타성과 시민 덕성까지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Benkler and Nissenbaum, 2006, pp. 405-409). 이는 곧 그가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언급한 사회적 동기가 이타심과 시민 덕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덕성(virtue)은 사람들을 CBPP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가 다시 덕성을 산출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CBPP는 덕성을 촉진하는 특정 또한 갖고 있는 셈이다(Benkler and Nissenbaum, 2006, pp. 409-419).¹⁰⁾

8) CBPP는 벤클러의 2002년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여기서 그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출현한 ‘제3의 생산모델’로 정의한다(Benkler, 2002, pp. 375-377). 그에 따르면, 동료생산은 하나의 조직혁신이며, 네트워크의 등장은 시장과 위계제에 대한 대안적인 조직 모델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례이다(Benkler, 2016, pp. 98-104).

9) 벤클러에 따르면, 동료생산에서 지식은 암묵적인 것이므로, 재산이나 계약 메커니즘을 매우 강력한 경제적 유인과 연결시켜 명시적으로 도출하기가 어렵다(Benkler, 2017, pp. 265-267).

벤클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생산이나 동료생산이 확대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기반 생산이 몰락하는 것은 아니다. CBPP는 정보재를 생산하는 현재의 기술 체계의 새로운 경쟁자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재 생산시장에 사회적으로 생산된 정보재를 새로운 대체재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 생산의 확산은 이용자 기호의 변화를 동반한다. 산업정보경제에서는 생산이 수동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동료생산은 수동적 차원에만 머물던 소비자들을 훨씬 더 적극적 이용자로 탈바꿈시키기 때문이다 (Benkler, 2006, pp.122-127).

이렇게 볼 때, 레식과 벤클러는 시장을 통해 영리나 수익을 추구하는 상업경제와 사회적 동기에 따라 운영되는 비시장 기반의 공유경제를 구분한 후 후자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공유경제의 중요성이나 그 현실적 가능성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것이 시장 기반의 상업경제와 양립가능한 방안을 탐구한다. 벤클러의 공유경제 개념에 대해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견해를 보여주는 사례로써,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평가(Lund, 2017, p.102) 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벤클러의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와 공존가능한 모델인 셈이다.

벤클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주문형 경제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외형 상 자원 공유라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영목표가 사회적 동기가 아닌, 영리와 수익에 있다. 이러한 주문형 경제는 공유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맥락에서 바라보며, 그래서 시장의 위협이 피고용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를 갖는다. 그는 주문형 경제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조합(mutual association)으로 전환해서 경제적 이익과 가치의 부담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은창 역, 2015, pp. x-xi).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공유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맥락에서 이해할 경우, 자

10) 벤클러에 따르면, 덕성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비롯되어 오늘날 도덕철학으로 이어진 개념이다(Benkler and Nissenbaum, 2006, pp.403-405). 이와 관련해서, 그는 공동체주의자나 공화주의자로 분류되는 매킨타이어(A. MacIntyre)와 샌델(M. Sandel)의 글을 인용하거나(ibid. pp.414-415), 테일러(C. Taylor)의 용어를 빌어 '해방'의 덕성이 자발적인 결정과 행동을 유도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ibid. pp.405-406). 이는 곧 벤클러가 공화주의자나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주의 시장경제와 공유경제의 본질적인 차이는 간과되며, 공유경제는 또 다른 수익창출 기회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테파니의 견해는 흥미롭다. 그는 자원의 공유를 통해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고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고 간 물질주의 탐욕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그래서 “공유경제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구원과 다르지 않다”(Stephany, 2015, p. 25)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유경제를 ‘정제된 자본주의’로 정의하면서, 예전에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회생활 영역에서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요구 때문에 이러한 공유경제가 출현했다고 본다(Stephany, 2015, pp. 40-42). 여기서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다른 영역이 아니라, 이 시장경제를 (더욱 세련되고 정제된 방식으로) 확장해주는 요인이 된다.

차량 공유기업인 집카(Zipcar)의 공동 창업자인 체이스도 위와 비슷한 견해를 보인다. 그는 공유경제를 협력경제로 정의하고 이것을 산업경제와 구분한다. 그가 보기에, 산업경제에서는 소유가 중요하지만 공유경제에서는 공유가 중요하다.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성장을 위해 생산을 늘리고 물리적인 제품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공유를 통해 삶과 환경을 모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Chase, 2015, pp. 333-344). 그에게 공유경제는 산업경제와 다른 방식으로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좀더 낮은 비용으로 이윤을 산출하려는 개인들에 의해 창조된 현상”(Olson and Kemp, 2015, p. 1)이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리활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라, 산업경제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이해된다.

공유경제 논의가 수익창출 맥락에서 진행되는 데에는 최근 공유경제의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 연구자들 내부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부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순다라얀은 공유경제, 또는 크라우드 기반 자본주의의 특징을 큰 시장 기반, 자본의 높은 영향력, 중앙집중화된 제도나 위계제가 아니라 크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개인과 전문가 사이의 모호한 경계, 완전 고용과 임시 노동(casual labor) 사이의 모호한 경계 등 5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공유경제 정의에 대해 상업적 교환영역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Sundarajan, 2016, pp. 26-27).

그렇다면 오늘날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에서부터 서로 상반된 관점이 공존하는 셈이다. 공유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또 다른 수익창출 기회

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구분되는 또 다른 비영리 영역으로 볼 것인가? 이 차이는 단순히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공유경제를 영리나 수익 차원에서 이해할 경우, 벤클러의 공유경제는 시장경제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수익창출 창출 기회를 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것이 된다. 그러나 그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디지털 기술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개인들이 어느 누구의 통제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느슨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과연 어느 유형이 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양자 모두인가, 아니면 둘 중 하나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작동되는 공유경제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공유경제의 유형과 주요 특징

공유경제가 영리형과 비영리형으로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의 유형은 크게 공유활동을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이나 운영 주체, 참여 주체, 대상 자원의 종류나 그 범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박건철·이상돈, 2016, pp. 24-25). 플랫폼의 성격이나 운영 주체의 경우, 영리추구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운영주체가 비영리 조직인 경우, 플랫폼의 성격은 영리조직이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사회적 동기와 같은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한다.¹¹⁾ 참여 주체의 경우, 공유 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되며, 흔히 P2P(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B2P(기업과 개인의 관계)로 구분되는데,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전자를 대표한다면 집사가 후자를 대표한다(Schor, 2014; Stephany, 2015, pp. 37-38). 대상 자원의 종류나 범위의 경우, 크게 유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양자는 각각 상품제공형 공유경제와 서비스 제공형 공유경제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와 후버가 각각 전자를 후자를 대표한다(박제

11) 민간조직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유경제도 존재한다. 이 경우 나라마다 구체적인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 논의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길현중, 2016, pp. 32-33). 그러나 이 글의 주요 분석대상인 벤클러는 공유경제를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 3의 대안으로 정의하는 바, 이 글에서도 논점의 일관성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유경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성·박은정, 2016, pp.152-155). 벤클러가 강조하는 CBPP는 P2P에 속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모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제공형 공유경제와 서비스경제형 공유경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에 관한 견해 차이를 고려할 경우, 이상의 분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이나 운영 주체’일 것이다. 영리형 공유기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면서 영리나 수익을 추구한다면, 비영리형 공유기업은 사회적 동기에 따라 자원을 공유하면서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나 통제에서도 벗어난, 즉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 3의 경제영역을 추구한다. 공유경제는 자원이용 방식에 따라 수탈형(extractive models)과 창조형(generative model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여기서 수탈이 자원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것이라면, 창조는 자원의 원천을 보존, 재생산, 증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탈형은 공유경제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만 사용하는 반면, 창조형은 CBPP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동기에 따라 작동된다(M. Bauwens and A. Pantazis, 2018, pp.302-304). 그렇다면 수탈형과 창조형의 구분은 영리형과 비영리형의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영리형 공유경제의 경우,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대표적이다. 우버는 차량공유 기업이다. 차량공유는 그 성격에 따라 카헤일링(car-hailing)과 카셰어링(car-sharing)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이동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후자는 차를 단기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버와 집카가 각각 전자와 후자를 대표한다. 우버는 우버 앱(Uber app)을 통해 승객과 차량(기사 포함)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에어비엔비는 숙박공유 기업이다. 숙박공유는 개인의 숙박공유와 휴가용 주택임대로 구분된다. 전자가 주로 P2P 형태로 운영된다면, 후자는 주로 B2P형태로 운영된다. 에어비엔비가 전자를 대표한다면, 후자는 홈어웨이(HomeAway)¹²⁾가 대표한다. 에어비엔비는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방이나 집, 별장 등)을 공유의 대상으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민성희·박정은, 2016, pp.35-38).

비영리형 공유경제는 동료생산으로 대표된다. 동료생산의 근원은 1960년대 미국

12) 홈어웨이는 현지 호스트가 소유한 멋진 곳을 여행객이 찾아 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셜 마켓플레이스(social market place)이다(<https://www.homeaway.co.kr/pages/press>).

의 해커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해커들은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무제한적이고 완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탈중심성을 추구했다. 1983년에 스톨먼(R. Stallman)은 이러한 해커 문화의 전통에 서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목표로 한 그누(GNU) 프로젝트를 선언했으며, 이후 이 프로젝트가 수많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자발적 협력 사업, 즉 동료생산으로 이어졌다. 1991년에는 토발즈(L. B. Torvalds)가 리눅스 커널(Linux kernel)의 초기 모델을 배포하면서 ‘그누/리눅스’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리눅스가 모든 동료생산 프로젝트들의 궁극적인 참조 모델로 기능하게 되었다(이항우, 2013, p. 34).

벤클러의 CBPP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러한 생산을 대표하는 사례로 FOSS 운동을 꼽는다(Y. Benkler, 2006, pp. 63-68). 그가 보기에,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어느 누구도 생산물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법을 관리하지 않으며, 여유시간에 자발적으로 협력에 참가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협력에 참가함으로써 보수를 받기도 하지만, 생산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료생산의 핵심원리는 탈집중화와 사회적 동기이며, 이 운동의 대표 생산물인 GNU/Linux operating system, The Apache web server, Perl and BIND 등은 제품의 질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기업의 생산물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Benkler and Nissenbaum, 2006, pp. 395-396).

IV. 비영리형 공유경제와 복지

1. 영리형 공유경제의 한계

오늘날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만큼, 공유경제 관련 논의는 대부분 영리형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안전성 문제, 새로운 규제 체계의 도입 문제, 세제 개편 문제, 새로운 유형의 노동시장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복지나 분배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노동시장 문제이다(박건철·이상돈, 2016, pp. 42-51).

전통적으로 기업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임금과 함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했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자원 제공자와 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수행할 뿐, 이들을 고용해서 관리하지 않는다. 정규직 고용보다는 프리랜서나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등의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나 독립계약자로 계약할 경우, 각종 근로기준 및 최저임금 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로부터도 배제된다. 그 결과, 공유경제에서 대부분의 계약자는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에서 임시직, 시간제, 파견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과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Berg, 2016, p. 18; Schor and Attwood Charles, 2017, p. 1).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 기초한 공유경제의 성장은 비정규직 혹은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¹³⁾의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작업자에게로 시장의 위험이 그대로 전가되기 쉽다(Sprague, 2015, pp. 56-58).

최근 미국에서 우버와 계약한 운전기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논쟁이 나타났다. 이유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쟁에서 우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버 운전기사에 대해 스스로 영업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하고 차량 유지비용도 회사가 아닌 기사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있으므로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운전기사들과 노동단체들은 일정 수준의 고객 평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¹⁴⁾될 수 있고 최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계약자와 달리 승객에게 받는 요금 또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근로조건에 자율성이 없으며, 그래서 우버 운전기사들을 사실상 우버에 고용된 피고용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한주희, 2016).¹⁵⁾

그런데도 주문형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희자원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해서 부수입을

13) ILO에 따르면,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은 불안정 고용 외에, 저임금과 사회보험 급여 제약, 노동권 제약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ILO, 2012, p. 29). 공유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주문형 앱 노동’, ‘플랫폼 노동’, ‘클라우드 워크’, ‘직(gig)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정의되며, 그 의미 또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 모든 용어들을 주문형 경제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며, 용어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안정 노동’으로 통일할 것이다.

14) 우버는 우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사들의 계정을 정기적으로 삭제한다(De Stefano, 2016, pp. 15-18).

15) 유럽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7년 12월 20일 판결을 통해 우버가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를 ‘정보 사회 서비스’가 아닌 ‘교통 분야의 한 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우버를 일반 택시 회사처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EUR-Lex home page, “Document 62015CJ043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62015CJ0434>).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다 공유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주업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 피고용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부업영역에서 불안정 노동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15년 ILO 설문조사에서 공유경제 종사자들의 40% 정도가 공유경제 활동에 따른 수입이 주수입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독립 계약자로 채용되지만,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일하고 자신의 수입 또한 그 플랫폼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이들은 작업량이 충분치 않거나 고객이 보수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수가 낮은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고객이 제시한 보수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플랫폼에서 청구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Berg, 2016, pp. 18-19).

그렇다면 공유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이나 수익창출 기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 공유경제가 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대안으로 기능하거나 적어도 이 측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공유경제를 수익창출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에 힘입어 유연안전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유기업이 자원의 공유를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라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연안전성이라는 이유로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으며, 그 초점이 유연 안전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도입하거나, 공유경제의 기반을 직접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 혹은 분배 문제에 관한 한, 아직까지 영리형 공유경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뿐이다.

2.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BPP)의 복지모델 가능성

영리형 모델과 달리, 벤클러의 CBPP는 대안적인 복지모델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듯 보인다. 그에게 공유재는 행위 주체가 시장이 요구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자 재산권 시스템의 대안을 의미한다(Benkler, 2006, p. 144). 그는 이러한 공유재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을 추구한다. 여기서 CBPP는 위계질서에 따라 배정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

라 참여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탈집중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구성된 각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된다. 모두에게 공유재가 자유의 물질적 토대로 기능하는 셈이다(Benkler, 2006, pp. 61-62).

벤클러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자유주의 정의론¹⁶⁾을 대표하는 사례로 롤즈와 드워킨의 이론을 꼽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CBPP 모델이 롤즈의 차등원칙에도 부합될 수 있지만, 액커맨의 자원평등 논의에 특히 잘 부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enkler, 2006, pp. 303-305). 벤클러가 보기에, 액커맨은 거래관계, 기본정보, 적당한 교육여건에 대한 접근을 시장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제시한 후, 이러한 조건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평등을 주장한다.¹⁷⁾

16) 자유주의자들은 노력과 보상이 서로 비례(하거나 일치)하는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자유나 평등의 조화를 중시하는데, 여기서 평등은 분배의 공정성 원칙에 부합되는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들은 하향평준화(leveling down)나 우연(luck, fortune)에 따른 분배에 특히 주목한다. 하향평준화는 평등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유인이 악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주동률, 2010). 우연에 따른 불평등은 노력과 무관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불평등으로서 자유주의의 공정한 분배원칙에 위배되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타고난 재능이나 출신배경과 같이 자연적·사회적 우연에서 비롯된 불평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우연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롤즈의 차등원칙이나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은 바로 우연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17) 벤클러는 액커맨의 자원평등론이 자신의 공유경제 개념에 특히 잘 부합된다고 주장하면서 액커맨의 '사회적 지분'(Social Stakeholding) 개념을 언급한다(Benkler, 2006, p. 305). 사실상 이 개념은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된다. 익히 알다시피, 기본소득 논의는 좁게 보면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 파레이스의 견해(van Parijs, 2006)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액커맨의 사회적 지분 논의도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양 쪽 모두 평등주의를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반 파레이스)이나 사회적 지분(액커맨)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다만 액커맨은 반 파레이스처럼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개인의 책임 문제를 간과할 뿐만 아니라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폐해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든 성인에게 21세에 한번 사회적 지분(80,000 달러)을 제공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Ackerman and Alstott, 2006, pp. 45-47).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불안정 노동'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른바 기본소득이 복지의 대안으로 종종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황덕순, 2016, pp. 290-292), 기본소득 개념은 공유경제와 대안적인 복지제도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매개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문형 경제가 불안정 노동

벤클러는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등장으로 적어도 빈곤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소들의 일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본다. 네트워크 정보 경제는 정보이용의 부족, 소통역량의 부족, 생산의 활동공간의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산업경제에서는 비용장벽과 거래제도 장벽 등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지만,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는 이 장벽들을 낮추거나 우회하는 방안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생산물은 비전유적(nonproprietary) 재화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한 기본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는 사람들이 경제적 행위주체로 참여하는 기회가 크게 확장되고 정보기반 글로벌 경제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이 평준화될 수 있다. 여기서 정보생산과 교환은 전유적 배제(a proprietary exclusion)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거래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래서 시장기반 및 비시장 기반 행위의 기초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Benkler, 2006, pp. 13-15, 301-308). 자유주의 정의론에서 보면,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등장이야말로 이미 훌륭한 개선(an unqualified improvement)인 셈이다.

벤클러에게 CBPP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 3의 대안이다. 그는 정부나 입법자들의 방해나 개입이 없다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CBPP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에게 동료생산은 배타적 전유권에 기초하지 않으며,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시장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생산이 확대될 경우, 그 만큼 빈부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Strahilevitz, 2007, pp. 1474-1475). 그의 CBPP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이자 복지 혹은 분배의 문제까지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인 셈이다(Papadimitropoulos, 2018, p. 836). 이와 관련해서, 그는 네트워크 정보경제가 “더욱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진정한 전환의 토대가 될 것”이며, “인간 복지, 개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수용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enkler, 2006, p. 473).¹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논의와 결합될 경우에는 액커맨의 자원평등론을 매개로 해서 벤클러의 공유경제 개념과 일정한 접점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벤클러의 CBPP는 분명 기존의 복지제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익히 알다시피, 복지제도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구분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복지모델(welfare regime)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시민주의 모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의 보수주의(또는 조합주의) 모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색슨 계열의 자유주의 모델이 그것이다. 시민주의 모델은 보편주의와 조세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를 이용해서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누구나 자산조사나 소득조사, 또는 기여(contribution)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자유주의 모델은 시장경쟁과 관련된 민간 복지 중심이다. 여기서 공적 복지는 자산조사나 소득조사에 기대어 저소득층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잔여주의 방식이며, 그것도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급여수준도 낮으며 심지어 낙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재분배 효과가 낮고 저소득층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보수주의 모델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전통적인 공동체나 위계제를 강조하고, 사회적 지위나 직업집단 별로 분리된 복지제도를 전제한다. 또한 보수주의 모델은 고용관계와 (기업과 노동자의) 기여에 기대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스웨덴처럼 조세에 기초한 것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G. Esping-Andersen, 1990, pp. 26-29).

이렇게 볼 경우 기존의 복지제도는 시장 중심(자유주의), 정부 중심(시민주의), 고용관계와 기여 중심(보수주의)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벤클러의 CBPP는 분명히 새로운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는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탈집중화를 강조하면서 그 근거를 오스트롬의 공동체 관리에서 찾는다. 그가 볼 때, 오스트롬은 지역 공동체의 자율규제 시스템이라는,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대안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FOSS 운동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관리가 확인된다(Benkler, 2010, pp. 148-153). 이는 곧 벤클러가 CBPP를 시장도 정부

18) 벤클러의 '공유제 기반 동료생산'이나 FOSS에서 사이버 공산주의(cyber-communism)의 가능성을 찾거나(Bauwens and Kostakis, 2014), 디지털 공유제(the digital commons)에 대한 자본주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복적인 공유방식'(subversive commoning)을 기대(Birkinbine, 2018)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FOSS는 공산주의보다 자유주의(libertarian)에 더 가까운 듯 보인다(Papadimitropoulos, 2018, pp. 838-839).

도 아닌 제 3의 대안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면서도, 복지제도나 복지모델에 관한 한 자유주의 모델을 따르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CBPP가 보수주의 모델처럼 고용관계와 기여를 전제하는 것도 아니다. 설령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불완전 고용이 확산되더라도, CBPP와 같은 비영리형 공유경제가 작동될 경우 불완전 고용이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영리형 공유경제가 작동될 경우, 자원 공유의 혜택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불완전 고용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영리형 공유경제와 비영리형 공유경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불완전 고용의 양산 여부에 있다기보다 공유 혜택의 확산 여부에 있는 셈이다.

벤클러에 따르면, 유인이나 처벌, 통제가 아닌 협력에 근거한 시스템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래서 이타심과 선의라는 인간의 본질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면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경제적 효과까지 개선할 수 있다 (Benkler, 2010). 그는 자발적인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생산이 화폐지급이나 배타적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전통적인 유인체계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부를 창출하는데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증하기 위해 특허권의 강화가 특허출원 수의 감소로 이어졌음을 보여준 러너의 실증연구¹⁹⁾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Benkler, 2006, p. 39). 그러나 러너의 실증연구와 충돌하는 이론적·경험적 근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지적 재산권 보호조치의 순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 보여주는 결과가 분명하지 않다 (Strahilevitz, 2007, pp. 1478-1484).

물론 러너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과잉보호가 ‘반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anticommons)²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벤클러가 CBPP를 대표하는 사례로 언급하는 FOSS 운동이 IT 영역 외부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동료 간 공유와 관련된, 물질적 자본과 비물질적 자본의 차이가 놓여 있을 것이다 (Strahilevitz, 2007,

19) J. Lerner (2002), “Patent Protection and Innovation Over 150 Years”, NBER working paper no. 8977.

20)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소유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할 때 자원은 과소이용되는 경향(즉, 반공유지의 비극)을 보인다” (Heller, 1998, p. 624).

pp. 1476-1478).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강조하는 사회적 생산이 자유주의자들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볼 때 더 좋은 사회를 창출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FOSS 운동과 같은 움직임이 물질적 자본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Strahilevitz, 2007, pp. 1489-1492).

IT 분야에서 FOSS 운동과 같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무관할 수 없다. IT 분야는 지식처럼 소진가능성이 없는 비물질적 자원이 이용되는 영역으로, 여기서는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용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작동될 수 있다. 문제는 소진가능한 물질적 자원이 일반적인 IT 외부 영역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서 FOSS 운동과 같은 비영리형 공유경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영역에서도 비영리형 공유경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²¹⁾ 소진가능한 공유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이 과대이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한다는 이유로 사적 소유권을 과도하게 설정하게 되면 자원이 오히려 과소이용되는 ‘반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오스트롬의 논의에 따라 공동체가 관리하는 편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안현효, 2016, pp. 72-76).

벤클러는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탈집중화를 강조하면서 그 근거를 오스트롬의 공동체 관리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FOSS 운동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관리가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한다.²²⁾ 그는 소진가능한 물질적 자원 영역에서 작동되는 공동체 관

21) 최근 IT 영역 외부에서도 FOSS 운동에서 비롯된 움직임이 종종 확인된다. Open Source Seed Initiative (<https://osseeds.org>) 나 open source architecture (https://en.wikipedia.org/wiki/Open-source_architecture) 가 대표적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벤클러의 CBPP와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지만, FOSS 운동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FOSS 운동이 IT 영역 외부에서 만큼 IT 영역 외부에서도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담하기 어렵다.

22) 벤클러에 따르면, 오스트롬은 하딘(G.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이 오류임을 보여주었지만, 오스트롬의 연구는 디지털 공유재와 같은 대규모 비전유적 동료생산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그룹에 집중된 것일 뿐이다. 대규모 동료생산의 가능성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Benkler, 2002, p. 378). 더 나아가 벤클러는 디지털 공유재가 실제 경제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Papadimitropoulos, 2018, pp. 840-842).

리가 소진가능성이 없는 비물질적 자원 영역에서도 그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가능성 측면에서는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셈이다. 문제는 두 자원이 공유경제 측면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소진가능성과 관련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질적 자원영역에서는 FOSS 움직임이 IT영역에서 만큼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IT 영역 내부에 사유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진가능성이 없는 비물질적 자원 영역에서조차 공유경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²³⁾

FOSS 운동이 주로 IT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이유가 네트워크 외부효과 때문인 데다 소진가능한 물질적 자원이 일반적인 IT 외부 영역에서는 이 효과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면, 공유경제가 IT 영역 외부에서 작동될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모습이나 작동방식에서는 IT 영역 내부에서 주로 작동되는 FOSS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벤클러는 공유경제의 가능성 측면에서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 IT 영역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FOSS로 대표되는 CBPP가 거의 대부분 정보, 지식, 문화와 같은 비물질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Benkler, 2013, p. 244).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을 계속 확대·적용함으로써 사회구조 전반을 상호주의 양식(mutualistic modality)에 따라 통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Benkler, 2013, p. 216). 그는 공유재 기반 동료 생산의 범위를 디지털 공유재의 비물질적 생산으로 제한하면서도, 공유재에 바탕을 둔 세계 경제의 통제를 꿈꾸는 셈이다. 이러한 간극 혹은 이중성은 그의 공유경제에서 디지털 공유재의 비물질적 생산이 어떻게 물질적 생산으로 연결되고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의 부재, 즉 심각한 공백으로 나타난다(Papadimitropoulos, 2018, p. 835).

문제는 벤클러가 공유경제의 확대가능성과 관련해 또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과 상업경제와 양

2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와 사유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 PS)를 비교할 경우, 양자가 공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흔히 전환비용, 기술개발 투자, 네트워크 외부효과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PS가 이미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OSS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이것이 PS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남형·김준일, 2016, pp. 144-147).

립가능성을 모색하며, 효율성을 공유경제가 ‘경제적 생산방식 중 하나’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꼽기도 한다. 공유경제가 효율성 조건을 충족하는 영역에서는 공유경제가 작동되면서 대안적인 복지체도로까지 기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상업경제가 타당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²⁴⁾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적 생산이 확대될 경우, 그 만큼 빈부격차가 완화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타심과 선의라는 인간의 본질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면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경제적 효과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CBPP라는 비영리형 공유경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공유경제에 관한 벤클러의 생각은 약간 모호하다. 한편에서는 FOSS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모델이 IT 영역 내부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IT 영역 외부로까지 이 모델의 확대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공유경제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다. 그의 생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상업경제의 존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IT 영역 내·외부로 공유경제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그의 견해는 적어도 모호함의 문제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도 있다.²⁵⁾ 그렇다고 해서 모호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FOSS가 주로 IT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이유가 소진가능한 물질적 자원이 일반적인 IT 외부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조차 FOSS와 같은 공유경제가 IT 영역 외부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벤클러는 이타성이나 시민 덕성과 같은 사회적 동기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타성이나 시민 덕성이 ‘사람들을 CBPP에 참여하도록

24) 벤클러는 자유주의자로서 효율성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공유경제가 빈곤이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조화를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그의 공유경제에서 자유주의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경우 대안적인 복지모형으로서 조금 더 급진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추후 과제일 수밖에 없다.

25) 단기적으로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전자의 확장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벤클러의 관점이 현실적인 맥락에서 대안적인 복지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의 CBPP 모델이 공유경제에서 비롯된 대안적인 복지모델과 기존 복지제도 사이에서 조화 혹은 균형을 추구하면서 전자의 확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가 다시 덕성을 산출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자본주의적인 경쟁과 이윤증식의 논리에 충실한 상업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사회적 동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안타깝게도 그는 어떠한 답변도 제시하지 못한다.

V. 결 론

영리형 공유경제와 달리, 벤클러의 CBPP는 공유를 통해 기회균등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그의 공유경제 모델은 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대안적인 모델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그의 추론이 타당하다면, 공유경제는 탈집중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대안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자원의 공유가 진행될 때 정부나 자치단체의 관리나 통제에 따른 비용문제, 즉 거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추론은 수용가능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IT 분야에서는 이미 FOSS와 같은 비영리형 공유경제가 탈집중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IT 분야 외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다. 공유경제의 존립조건인 자원의 소진가능성이나 네트워크 외부효과 측면에서 IT 영역과 그 외부 영역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정부의 개입없이 탈집중화된 방식으로 비영리형 공유경제가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대안적인 복지모델로 기능할 있다고 기대하지만, 이는 너무도 낙관적인, 그래서 비현실적인 믿음에 가깝다.

게다가 벤클러는 단기적으로 공유경제와 상업경제와 조화를 추구하면서 장기적

26) OSS와 같은 비영리형 공유경제에 대해,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힘입어 시장을 독과점화해서 이에 따른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OSS는 라이선스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소스코드 작성자가 사용자에게 배포비용 이상의 돈이나 로열티를 요구하지 못하는 규제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남형·김준일, 2016, p.128). 이러한 OSS가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따른 독점화로 이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독점은 기술 표준화에 따른 결과일 뿐 반드시 독점이윤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영리형 공유경제에서라면,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작동될 경우 그 결과가 독점이윤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으로는 전자를 IT 영역 내·외부로 더욱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그의 생각에는 상당한 모호함이 담겨 있다. 공유경제의 존립조건인 자원의 소진가능성이나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단기와 장기에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없는 데다, 그가 공유제의 특징으로 강조하는 사회적 동기, 즉 이타성이나 시민덕성의 문제가 상업경제가 작동되는 현실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CBPP 모델은 대안적인 복지모델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갖고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이것을 구현하는 방안에서 상당히 큰 논리적 또는 실천적 공백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길현종, “공유경제의 정의와 현황,” 길현종 외,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노동연구원, 2016.
(Translated in English) Kil, Hyun-Jong, “Definition and Status of the Sharing Economy,” Kil, Hyun-Jong et al., *Sharing Economy and Employment Relationship*, Korea Labor Institute, 2016.
2. 민성희·박정은, “공유경제 비즈니스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30호, 2016, pp. 26-42.
(Translated in English) Min, Sung-Hee and Jung-Eun Park,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Business Cases of Sharing Economy,” *KDB Monthly Bulletin*, No. 730, 2016, pp. 26-42.
3. 박건철·이상돈,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2016. 12.
(Translated in English) Park, Kun-Chul and Sang-don Lee, “City and Digital Sharing Economy for Social Innovation,” Seoul Digital Foundation, 2016.
4. 박제성·박은정, “공유경제와 노동법,” 길현종 외,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노동연구원, 2016.
(Translated in English) Park, Je-sung and Eun-Jung Park, “Shared Economy and Labor Law,” Kil, Hyun-Jong et al., *Sharing Economy and Employment Relationship*, Korea Labor Institute, 2016.
5. 손상영,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정책적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Translated in English) Sohn, Sang-Young, “Theory and Reality of the Sharing Economy, and Policy Response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6.
6. 안현효,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3권 제2호, 2016, pp. 68-91.

- (Translated in English) Ahn, Hyun-Hyo, "Cognition Based on the Paradigm for Common Resources," *Marxism* 21, Vol. 13, No. 2, 2016, pp.68-91.
7. 이남형 · 김준일, "경제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경제학연구』, 제64집 제2호, 2016. pp.127-166.
(Translated in English) Lee, Nam-Hyung and Joon-Il Kim, "The Knowns and the Unknowns about Open Source Software: History,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64, No. 2, 2016, pp.127-166.
 8. 이다혜,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 『노동법연구』, 제42호, 2017, pp.401-441.
(Translated in English) Lee, Da-Hye, "Sharing Economy and the Challenges of Labour Law," *Labor Law Review*, No. 42, 2017, pp.401-441.
 9. 이상호, "공유경제, 소유기반 경제 하에서의 작은 실험?" 여유진 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7.
(Translated in English) Lee, Sang-Ho, "Sharing Economy, A Small Experiment on the Ownership-based Economy?" Yeo Eu Jin et al.,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Korean Welfare Mode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10. 이항우, "동료생산과 공유경제," 참여사회포럼(2013. 8. 29.), 참여사회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Lee, Hang-Woo, "Peer Production and Sharing Economy," Participatory Society Forum (August 29, 2013), Participatory Society Research Institute.
 11. 주동률, "하향평등 반론(Levelling-Down Objection)과 평등주의의 대응," 『哲學』, 제103호, 2010, pp.207-240.
(Translated in English) Choo, Dong Ryul, "An Egalitarian Response to the Levelling-Down Objection," *Philosophy*, No. 103, 2010, pp.207-240.
 12. 한주희, "미국의 우버 운전기사 현황 및 근로자 지위 관련 논쟁,"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4월호, pp.51-64.
(Translated in English) Han, Joo-Hee, "A Debate on the Uber Driver Situations and Employee Status in the US," *International Labor Brief*, April 2016, pp.51-64.
 13. 황덕순, "고용형태 다양화와 대안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황덕순 외,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6.
(Translated in English) Hwang Deok-Soon,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and Alternative Social Welfare Paradigms," Hwang Deok-Soon et al., *A Study on Employment Relation Change and Social Welfare Paradigm*, Korea Labor Institute, 2016.
 14. Ackerman, B. and A. Alstott, "Why Stakeholding?"; in B. Ackerman, A. Alstott and P. van Parjs, *Redesigning Distribution*, Verso, London, 2006.
 15. Bauwens, M. and V. Kostakis, "From the Communism of the Capital to Capital for the Commons: Towards an Open Co-operativism," *tripleC*, Vol. 12, No. 1, 2014, pp.356-361.
 16. Bauwens, M. and A. Pantazis, "The Ecosystem of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and its Transformative Dynamics," *The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2, 2018, pp.302-319.
 17. Benkler, Y., "Coase's Penguin, or, Linux and the Nature of the Firm," *The Yale Law*

- Journal*, Vol. 112, No. 3, 2002, pp.369-466.
18. _____, "Sharing Nicely," *The Yale Law Journal*, Vol. 114, No. 2, 2004, pp.273-358.
 19. _____, *The Wealth of Networks*, Yale Univ. 2006; 최은창 역, 『네트워크의 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0. _____, *The Penguin and Leviathan*, New York: Crown Business, 2010.
 21. _____, "Practical Anarchism: Peer Mutualism, Market Power, and the Fallible State," *Politics & Society*, Vol. 41, No. 2, 2013, pp.213-251.
 22. _____, "Peer Production and Cooperation"; In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the Internet*, J. Bauer & M. Latzer (ed.). Edward Elgar, Cheltenham, 2016.
 23. _____, "Peer Production, the Commons, and the Future of the Firm," *Strategic Organization*, Vol. 15, No. 2, 2017, pp.264-274.
 24. Benkler, Y. and H. Nissenbaum, "Commons Based Peer Production and Virtu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14, No. 4, 2006, pp.394-419.
 25. Berg, J., "Income Security in the On-demand 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4, ILO, 2016.
 26. Birkinbine, B., "Commons Praxis: Towards a Critical Political Economy of the Digital Commons," *tripleC*, Vol. 16, No. 1, 2018, pp.290-305.
 27. Chase, R., *Peers Inc*, Headline Publishing Group, 2015, 이지민 옮김, 『공유경제의 시대』, 신빛드프레스, 2016.
 28. De Stefano, V.,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ILO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1, 2016.
 29.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 1990.
 30. Goudin, P., "The Cost of Non-Europe in the Sharing Economy,"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6.
 31. Heller, M.,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Harvard Law Review*, Vol. 111, No. 3, 1998, pp.621-688.
 32. ILO, "From Precarious Work to Decent Work," ILO, Bureau for Workers' Activities, 2012.
 33. Lessig, L.,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08.
 34. Lund, A., *Wikipedia, Work and Capitalism: A Realm of Freedom?*, London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7.
 35. Olson, M. J. and S. J. Kemp, "Sharing Economy," PiperJaffray Investment Research (March), 2015.
 36.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7. Papadimitropoulos, V.,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in the Work of Yochai Benkler," *tripleC*, Vol. 16, No. 2, 2018, pp.835-856.
 38. Schor, J., "Debating the Sharing Economy," Great Transition Initiative, 2014.
 39. Schor, J. B. and W. Attwood Charles, "The 'Sharing' Economy: Labor, Inequality and Social Connection on for Profit Platforms," *Sociology Compass*, 2017;11:e12493.

<https://doi.org/10.1111/soc4.12493>.

40. Sprague, R., "Worker (mis)Classification in the Sharing Economy," *ABA Journal of Labor & Employment Law*, No. 31, 2015, pp.53-76.
41. Stephany, A., *The Business of Sharing*,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42. Strahilevitz, L. J., "Wealth without Markets?" *The Yale Law Journal*, Vol. 116, No. 7, 2007, pp.1472-1516.
43. Sundarajan, A., *The Sharing Economy*, Cambridge & London: MIT Press, 2016.
44. van Parijs, P.,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re the Twenty-first Century"; in B. Ackerman, A. Alstott and P. van Parijs, *Redesigning Distribution*, Verso, London, 2006.
45. Weitzman, M. L., *The Share Economy: Conquering Stagflation*, Harvard Univ, 1984.

The Sharing Economy and Welfare: Focused on the Implication of Benkler's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Sang Ho Lee**

Abstract

This article is to identify whether the nonprofit-seeking sharing economy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inequality, centered on the Benkler's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CBPP). A nonprofit-seeking sharing economy (eg free or open source software, FOSS) offer the possibility of mitigating the inequality by sharing, and can be seen as an alternative model to welfare. However, He acknowledges that CBPP models are dominant within the IT field but argues that this model can be extended beyond the IT. He also refers to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haring economy while seeking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commercial economy. While he points out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IT in terms of network externalities which are the material conditions of the CBPP. and seeks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commercial economy. He argue that we need to expand the CBPP. But He is silent about that strategy or strategy.

Key Words: sharing economy, commercial economy peer production, network externality, independent contractors

JEL Classification: B2, B3, I3, J6

Received: May 17, 2019. Revised: July 23, 2019. Accepted: Sept. 6, 2019.

* This paper was prepar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Lee(2017).

** Assistant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Korea, Phone: +82-2-2280-1631, e-mail: lsh09191@naver.com